

지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
檢 討 報 告

검토자 :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진

1. 提出者: 瑞山市長

2. 提出日字: 1997. 5. 30

3. 提案理由

-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지급 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5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규정함 (안 제3조).

5.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.